

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위원회 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제9조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본 의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한 임상실습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분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임상실습 책임교수로 위원을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(임상실습 책임교수)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⑤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상실습위원회의 기능) 임상실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통합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세부목표에 관련한 사항

② 통합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학생주치의 교육과정의 세부목표에 관련한 사항

④ 학생주치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임상실습 교육담당 전공의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(신설 2015.11.01.)

⑥ 기타 임상실습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개정 2015.11.01.)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사안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행정 처리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.

제 5조(운영비 지원) 통합임상실습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기획, 운영, 평가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급하며 그 금액은

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교육담당 전공의) 각 임상실습 과정은 교육담당 전공의를 두고,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도록 한다.(신설 2015.11.01.)

① 학생 출결 사항 확인

② 기본 술기 교육 및 피드백

③ 환자 지정 및 의무기록 확인

④ 전공의를 위한 임상실습 교육 워크숍 참석

⑤ 기타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사항에 관한 실무

제7조(기타사항)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(개정 2015.11.01.)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